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부과) 제외대상 알림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등 정부 지침을 통해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도록 한 경우 등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부과) 제외대상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부과) 제외대상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파견직 권유진 시설사무관 안상혁 과장 전결 2021. 3. 21.
이채은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1504 (2021. 3. 22.) 접수

우 30103 환경부 환경부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48 팩스번호 044-201-7351 / rossete@me.go.kr / 대국민 공개